



- 2021년(2020년도 실적) 출자·출연기관 -

# 기관 경영평가 매뉴얼

2020년 06월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단



# 【 목 차 】

I . 2021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주요내용	1
1. 평가추진체계	3
2. 평가방식	5
3. 용어의 정의	5
4. 평가지표 측정방식	5
5. 평가등급 부여기준	13
6. 경영평가단의 이해충돌방지 기준 준수 의무	14
II . 기관 평가지표 체계 및 지표정의서	15
1. 시흥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모델	17
2. 시흥시 출연기관 공통부문 평가지표	18
1) 출연기관 공통부문 평가지표체계	18
2) 출연기관 공통부문 평가지표 지표정의서	19
3. (재)시흥산업진흥원 사업부문 평가지표	51
1) 개별 사업부문 평가지표체계	51
2) 개별 사업부문 평가지표 지표정의서	52
4.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부문 평가지표	58
1) 개별 사업부문 평가지표체계	58
2) 개별 사업부문 평가지표 지표정의서	59

5. 시흥매화산단개발(주) 경영평가 평가모델 .....	66
1) 출자기관 평가지표체계 .....	66
2) 출자기관 평가지표 지표정의서 .....	67
III. 기관장 평가지표 체계 및 지표정의서 .....	75
1. 기관장 이행성과계약 평가모델 .....	77
1) 기관장 평가지표체계 .....	77
2) 평가지표별 지표정의서 .....	78

# **I. 2021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주요내용**

---

1. 평가추진체계
2. 평가방식 : 3단계 평가
3. 용어의 정의
4. 평가지표 측정방식
5. 평가등급 부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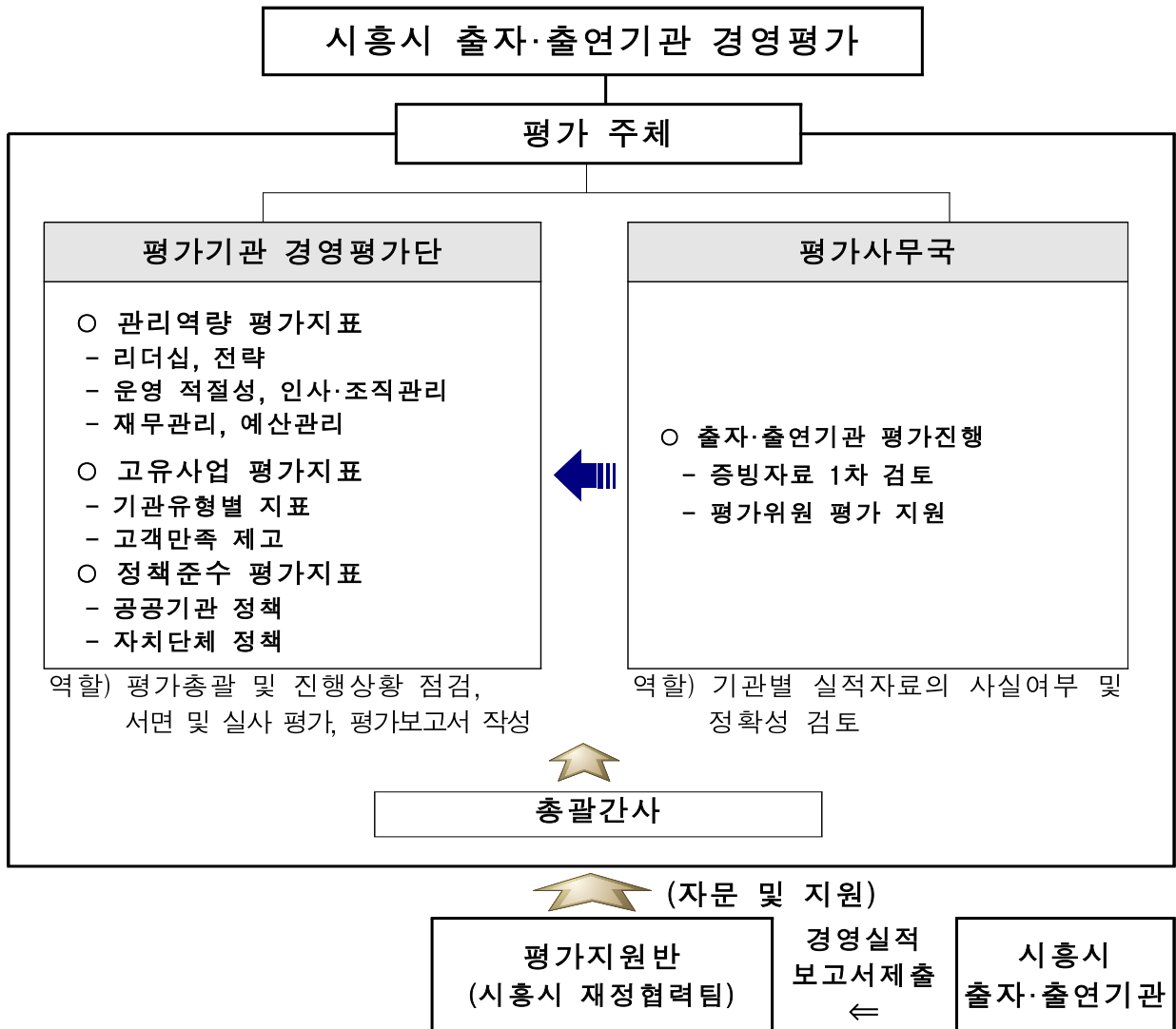
# 1. 평가추진체계

## ○ 경영평가단

- 경영평가단 : 서면 및 현장실사 평가, 기관별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총괄 및 진행상황 점검, 경영평가보고서 작성 등
- 평가사무국 : 기관별 실적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경영평가단에 제시

## ○ 시흥시 평가지원반(재정협력팀)

- 경영평가단 지원



[그림 1] 평가추진 체계도

구 분

관리역량 평가, 30%

고유사업 평가, 65%

정책준수 평가, 5%

출연  
기관  
평가  
분야

**I. 리더십/전략**

1-1. 리더십

- ① 경영층 리더십·전문성

1-2. 전략

- ① 중장기 및 주요사업 계획

**II. 경영시스템**

2-1. 운영 적절성

- ① 인사·조직, 재무, 예산관리의 적정성

2-2. 인사·조직관리

- ① 지원기능인력 비율
- ② 관리직(팀장급 이상) 비율
- ③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 ④ 임·직원 교육실적

2-3. 재무관리

- ① 자체수입률
- ② 일반관리비충당율

2-4. 예산관리

- ①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 ②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 ③ 조달계약 실적
- ④ 이월금 적정 처리

**III. 사회적 가치**

3-1. 일자리 확대

- ① 일자리 창출
- ② 일자리 질 개선

3-2. 사회적 책임

- ① 고객 및 주민참여
- ② 윤리경영
- ③ 노사상생
- ④ 시설·안전관리
- ⑤ 지역사회 공헌
- ⑥ 사회적 약자 배려
- ⑦ 친환경 경영
- ⑧ 채용비리 방지

**IV. 경영성과**

4-1. 기관 고유사업

- ① 기관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4-2. 고객만족 성과

- 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② 고객만족 제고 노력

**V. 정책준수**

5-1. 공공기관 정책

- ① 공공기관 정책 준수

5-2. 자치단체 정책

- ① 자치단체 정책 준수

[표 2] 시흥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 분야



## 2. 평가방식 : 3단계 평가

- 1단계 : 기관별 자체 경영실적보고서(관리역량 및 고유사업)에 기초한 서면평가
- 2단계 : 기관별 서면평가 결과에 기초한 현장평가(경영평가단의 기관방문)를 통해 실적의 사실여부 및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현장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 실시
- 3단계 : 경영평가단 회의에서 기관별 서면 및 현장평가 결과의 종합적 검토 및 확인

## 3. 용어의 정의

- 평가대상연도 또는 당해연도는 2020년도를 의미함.
- 전년도는 2019년도를 의미함.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은 2017년~2019년도의 실적을 평균한 값을 의미함.
- 목표부여방식에서 기준치는 직전 3개년 실적 평균치를 의미함.
- 평점은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표시한 점수로서 지표정의서에 정의된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정함.
- 득점은 평가지표의 배점에 평점을 곱하여 산출된 평가점수로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 상향지표와 하향지표
  - (상향지표) 수치가 클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지표를 의미
    - ※ (예) 영업수지비율
  - (하향지표) 수치가 작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지표를 의미
    - ※ (예) 부채비율

## 4. 평가지표 측정방식

### (1) 정량지표 측정방식

- 정량지표는 과거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준 목표에 따른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목표대실적 방법과 목표부여 방법, 단계별평가 중 지표성격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방법을 지정함.

- 기관 간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유형별로 동일한 지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신설 등)가 없는 한,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함.

## 1) 목표대실적

### ○ 적용 대상

- 목표대실적 방법은 신규사업 또는 전년도 실적이 없을 경우, 평가에 이용되는 분모가 100을 넘길 수 없을 때 사용
- 주로 신규사업 등과 같이 증가율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객석점유율, 가동률 등과 같이 실적의 증가가 100을 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 평점 산식

- 목표달성도 × 0.7 + 목표의 적정성 × 0.3

### ○ 목표달성도 계산

- 관련 지표정의서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시한 목표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를 계산

$$\text{목표달성도}(Y) = \frac{\text{실적}}{\text{목표}}$$

### ○ 평점 계산

-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상향지표와 낮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하향지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상향지표	평점 = 목표달성도(Y) × 100점
하향지표	평점 = $\frac{1}{\text{목표달성도}(Y)} \times 100\text{점}$

-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할 수 없음

○ 평가 방식

- '목표대실적' 평가방법의 경우, 목표달성도(70%)와 목표의 적정성(30%)을 함께 평정함으로써 기관이 제시한 목표치의 적정성을 검증함.
- 목표달성도와 목표의 적정성을 별도로 평가하여 각각의 득점을 구한 후 득점을 합산하여 지표의 득점을 계산함.

구분	합계	목표달성도	목표의 적정성
배점구성	100%	70%	30%

- '목표의 적정성' 평가는 아래 등급별 비계량 지표의 평점 부여

A+	A	B+	B	C+	C	D+	D
100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65점	60점

목표의 적정성(30%) 세부평가 항목
① 성과목표를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설정하였는가? ②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는가? -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③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는가? -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 2) 목표부여

### ○ 목표달성도 계산

- 해당지표에 부여된 최고·최저목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를 계산

$$\text{목표달성도}(Y)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 평점 계산

- 다음 산식에 따라 평점을 계산하되,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하지 않도록 함

$$\text{평점} = \text{목표달성도}(Y) \times 100\text{점}$$

### ○ 목표 부여

- 최고·최저목표는 지표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론상 최고·최저치, 기준치에 일정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통계분포에 의하는 방법, 경영목표를 감안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음(지표정의서에 기준치 및 목표부여 방식 명시)
- 상향지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50%를 부여하고, 하향지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50%를 부여(시설용량 등, 지표 특성에 따라 별도의 목표를 부여 가능)

상향지표	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고목표 : 기준치 × 90%
최저목표 : 기준치 × 50%	최저목표 : 기준치 × 150%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이론상 가능한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초과할 수 없음

- 목표 설정의 기준치는 직전 3개년 실적의 평균으로 하되,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는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1개년 또는 2개년 실적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1개년 실적 또는 2개년 실적의 평균값을 기준치로 함

### 3) 단계별평가

#### ○ 적용대상 지표 (지표정의서에 명시)

- 평가내용을 수치화·객관화함으로써 정량지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공공기관 정책 준수' 등과 같이 그 시행여부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명확히 부여할 수 있는 경우

#### ○ 평가점수의 부여

- 지표별로 발생가능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평가점수를 부여
- 단계의 구분과 단계별 평가점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표정의서에 의함

(2) 정성지표 측정방식

-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기관의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
-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

< 절대평가 방법 >

○ 평가등급 구분 및 평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 점	100점 ~ 90점	90점 미만~ 80점	80점 미만~ 70점	70점 미만~ 60점	60점 미만~ 50점	50점 미만~ 40점	40점 미만~ 30점	30점 미만~ 20점	20점 미만~ 0점

○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아래의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토대로 평가

○ 등급부여 기준

☞ 1등급 : 90점 이상 ~ 100점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부서 직원들의 업무연찬 노력정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 2등급 : 80점 ~ 90점 미만

- 1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1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3등급 : 70점 ~ 8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전기 평가 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 4등급 : 60점 ~ 70점 미만

- 3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3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5등급 : 50점 ~ 6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 6등급 : 40점 ~ 5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 사업실적 미달,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 해당부서 직원들의 노력의 정도가 미흡하여 과거수준의 실적에 다소 미달하는 경우

☞ 7등급 : 30점 ~ 40점 미만

- 6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6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8등급 : 20점 ~ 3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 9등급 : 0점 ~ 20점 미만

- 8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 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고객만족도 측정방식

- 당해연도 점수(가중치 70%)와 전년대비개선도(가중치 30%)를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함.

구분	측정 방식
고객만족도 평가방식	<p>◆ 당해연도 점수(가중치 70%)와 전년대비개선도(가중치 30%)를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함.</p> <p>※ 고객만족도 점수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연도 평가 (70점 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목표 : 100점</li> <li>- 최저목표 : 0점</li> </ul> </li> <li>○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 (30점 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li> <li>- 최저목표 : 0점</li> </ul> </li> <li>○ 총 평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math>\frac{\text{실적}}{100\text{점}} \times 70\text{점} + \frac{\text{실적}}{\text{전년도실적} + (100\text{점} - \text{전년도실적}) \times 10\%} \times 30\text{점}</math></li> </ul> </li> <li>○ 세부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기관 또는 평가 유예 등의 사유로 전년도 고객만족도조사 점수가 없는 경우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는 총점환산을 적용한다.</li> <li>*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개선도 부분은 만점으로 평가한다.</li> <li>*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표본이 25표본 미만이거나, 기관의 여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정성평가로 대체 가능</li> </ul> </li> </ul>



## 5. 평가등급 부여기준

### (1) 기관평가 평가등급

- 피평가기관의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 정책준수 항목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하며, 점수의 합계는 100점으로 함.

평가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등급	S	A	B	C	D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2) 기관장평가 평가등급

- 피평가기관장의 리더십 및 책임경영, 성과과제 항목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하며, 점수의 합계는 100점으로 함.
- 기관장평가 평가등급은 기관평가 평가등급 보다 등급별 평가점수가 5점 높게 설정되어 등급 향상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평가점수	95점 이상	95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75점 이상	75점 미만 ~65점 이상	65점 미만
등급	S	A	B	C	D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시흥매화산단(주)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거 기관장 평가를 제외함.

## 6. 경영평가단의 이해충돌방지 기준 준수 의무

- 용역수행 기관은 평가단 구성 시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의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흥시(평가주관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평가위원 선임의 이해충돌방지 점검 수준은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의 2항을 준용하여 점검 시 적용함.
  - 제6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기관이 이를 위반할 시 시흥시는 지방계약법 제30조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II. 기관 평가지표 체계 및 지표정의서**

---

1. 시흥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모델
2. 시흥시 출연기관 공통부문 평가지표
3. (재)시흥산업진흥원 사업부문 평가지표
4.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부문 평가지표
5. 시흥매화산단개발(주) 경영평가 평가모델



# 1. 시흥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모델

구분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관리역량 평가지표	I. 리더십·전략 (5점)	리더십(3)	(1) 경영층 리더십·전문성	3	정성
		전략(2)	(2) 중장기 및 주요사업 계획	2	정성
	II. 경영시스템 (15점)	운영 적절성(8)	(3) 인사·조직, 재무, 예산관리의 적정성	8	정성
		인사·조직관리 (3)	(4) 지원기능인력 비율	0.5	정량
			(5) 관리직(팀장급 이상) 비율	0.5	
			(6)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1	
			(7) 임·직원 교육실적	1	
		재무관리 (2)	(8) 자체수입률	1	정량
			(9) 일반관리비충당율	1	
		예산관리 (2)	(10)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0.5	
			(11)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0.5	
			(12) 조달계약 실적	0.5	
			(13) 이월금 적정 처리	0.5	
	III. 사회적 가치 (10점)	일자리 확대(3)	(14) 일자리 창출	1	정성
			(15) 일자리 질 개선	2	혼합
		사회적 책임(7)	(16) 고객 및 주민참여	1	정성
			(17) 윤리경영	1	정성
			(18) 노사상생	1	정성
			(19) 시설·안전관리	1	정성
			(20) 지역사회 공헌	1	정성
			(21) 사회적 약자 배려	1	혼합
			(22) 친환경 경영	1	정성
			(23) 채용비리 방지	(1.5)	정량
<b>관리역량지표 소계</b>				<b>30점</b>	
고유 사업 평가 지표	IV. 경영성과 (65점)	기관 고유사업(50)	(24) 기관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50	혼합
		고객만족 성과(15)	(25)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	정량
			(26) 고객만족 제고 노력	5	정성
<b>고유사업지표 소계</b>				<b>65점</b>	
정책 준수 평가 지표	V. 정책준수 (5점)	공공기관 정책(2)	(27) 공공기관 정책 준수	2	정량
		자치단체 정책(3)	(28) 자치단체 정책 준수	3	혼합
<b>정책준수지표 소계</b>				<b>5점</b>	
<b>총 합 점 수</b>				<b>100점</b>	

## 2. 시흥시 출연기관 공통부문 평가지표

### 1) 출연기관 공통부문 평가지표체계

구분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관리역량 평가 지표	I. 리더십·전략 (5점)	리더십(3)	(1) 경영층 리더십·전문성	3	정성	
		전략(2)	(2) 중장기 및 주요사업 계획	2	정성	
	II. 경영시스템 (15점)	운영 적절성(8)	(3) 인사·조직, 재무, 예산관리의 적정성	8	정성	
			인사·조직관리 (3)	(4) 지원기능인력 비율	0.5	정량
		(5) 관리직(팀장급 이상) 비율		0.5		
		(6)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1		
		(7) 임·직원 교육실적		1		
		재무관리 (2)		(8) 자체수입률	1	
			(9) 일반관리비충당율	1		
		예산관리 (2)	(10)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0.5		
			(11)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0.5		
			(12) 조달계약 실적	0.5		
			(13) 이월금 적정 처리	0.5		
		III. 사회적 가치 (10점)	일자리 확대(3)	(14) 일자리 창출	1	정성
				(15) 일자리 질 개선	2	혼합
	사회적 책임(7)		(16) 고객 및 주민참여	1	정성	
			(17) 윤리경영	1	정성	
			(18) 노사상생	1	정성	
			(19) 시설·안전관리	1	정성	
			(20) 지역사회 공헌	1	정성	
			(21) 사회적 약자 배려	1	혼합	
			(22) 친환경 경영	1	정성	
			(23) 채용비리 방지	(1.5)	정량	
<b>관리역량지표 소계</b>				<b>30점</b>		
고유 사업 평가 지표	IV. 경영성과 (15점)	고객만족 성과(15)	(25)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	정량	
			(26) 고객만족 제고 노력	5	정성	
<b>고유사업지표 소계</b>				<b>15점</b>		
정책 준수 평가 지표	V. 정책준수 (5점)	공공기관 정책(2)	(27) 공공기관 정책 준수	2	정량	
		자치단체 정책(3)	(28) 자치단체 정책 준수	3	혼합	
<b>정책준수지표 소계</b>				<b>5점</b>		

## 2) 출연기관 공통부문 평가지표 지표정의서

### (1) 관리역량 평가지표 (공통 배점: 30점)

#### I 리더십·전략

지 표 명	경영층 리더십·전문성				
대 분 류	리더십·전략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 파악 및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li> <li>○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li> </ul>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관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 파악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최고경영자로서 조직체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경영의지를 표명하고 있는가?</li> <li>- 기관의 설립목적에 기반하여 비전과 미션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li> <li>- 비전과 미션이 조직구성원과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li> </ul> </li> <li>②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목표달성과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예: 사업수지, 인력 및 조직구조조정, 사업활성화, 노사문제 등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li> <li>- 기관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부서별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그 성과는 적절한가?</li> <li>- 내부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직원의 동기부여(동기부여 방안이나 특수시책)나 필요한 교육·지원 등을 시행하고 이를 성과향상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li> </ul> </li> <li>③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협력과 지원(예산·사업 확보 등) 정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li> <li>- 지역주민·시민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li> </ul> </li> </ul>				
세 부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지원'은 직무수행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 등을 의미한다.</li> <li>○ '경영층'은 현재의 기관장 및 임원을 의미하며, 유고시는 대행책임을 맡고 있는 차하위 관리자를 의미한다.</li> <li>○ 평가대상연도의 실적을 토대로 리더십을 평가하고, 경영층이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후임 실적을 모두 평가한다.</li> </ul>				

<b>지 표 명</b>	<b>중장기 및 주요사업 계획</b>				
<b>대 분 류</b>	리더십·전략		<b>중 분 류</b>	전략	
<b>가 중 치</b>	2점	<b>지표성격</b>	정성	<b>평가방법</b>	절대평가
<b>지표정의</b>	<p>○ 당해 기관의 중장기전략이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설립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에 부응한 비전과 미션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사업별·부서별 목표와 연계되어 타당하게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p> <p>○ 주요사업별로 인력·예산 등 조직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점검과 환류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p>				
<b>평가내용</b>	<p>① 중장기전략 수립의 타당성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기관의 전략이 기관의 설립목적과 자치단체의 정책방향에 기반한 비전 및 미션으로부터 도출되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가?</li> <li>- 당해 기관의 전략이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li> <li>- 당해 기관의 전략이 사업별·부서별 목표와 연계되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가?</li> </ul> <p>② 조직자원 배분·관리 및 사업추진과정 점검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별로 인력·예산 등 조직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가?</li> <li>-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가?</li> <li>-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성과점검 등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i> <li>- 주요사업 추진상의 환경변화·문제점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가?</li> </ul>				
<b>세 부 평가방법</b>	<p>○ 중장기전략 수립시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목표설정이 체계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아울러 경영전략을 구성하는 전략목표·전략과제·세부과제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사업별·부서별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p>				



II

**경영시스템**

<b>지 표 명</b>	<b>인사·조직, 재무, 예산관리의 적정성</b>				
<b>대 분 류</b>	경영시스템		<b>중 분 류</b>	운영 적절성	
<b>가 중 치</b>	8점	<b>지표성격</b>	정성	<b>평가방법</b>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조직구조 및 운영의 적절성, 인사관리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예산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b>평가내용</b>	<p>① 조직관리의 적절성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기관의 미션 및 전략 달성을 위한 적절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li> <li>- 경영환경 분석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구조 및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가?</li> <li>- 의사소통채널 구축 여부, 문제 발생 시 지원 정도 등 사업부서와 지원 부서 간의 협력수준은 적절한가?</li> </ul> <p>② 인사관리의 적절성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가 합리적이며, 직무 및 직급에 적합한 역량기준을 적용하여 채용 및 승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li> <li>- 채용 및 인사관리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li> <li>- 구성원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li> <li>- 안전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li> </ul> <p>③ 재정계획의 적정성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기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정운영방향이 설계되어 있는가?</li> <li>- 자치단체의 정책운영방향 등을 반영하여 재정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li> <li>- 중장기 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과의 연동수준이 적절한가?</li> <li>- 주요사업별 재정계획에 대한 예측시나리오 수립 등 기관의 재정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li> </ul> <p>④ 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li> <li>-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li> <li>-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정한가?</li> <li>- 결산 및 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한가?</li> </ul> <p>(결산절차의 적절성, 회계관리제도의 적절성 및 운영개선 노력, 운영비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통한 당해연도 예산 대비 운영비예산 절감실적, 예산 대비 집행의 차이분석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합리적 제고노력 등)</p>				
<b>세 부 평가방법</b>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은 중장기 경영전략·중장기 재무계획과의 연계성, 전기 집행실적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반영, 주요 투자사업의 자체 투자심사분석 실시 및 결과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b>지 표 명</b>	<b>지원기능인력 비율</b>			
<b>대 분 류</b>	경영시스템	<b>중 분 류</b>	인사·조직관리	
<b>가 중 치</b>	0.5점	<b>지표성격</b>	정량 (하향지표)	<b>평가방법</b> 단계별평가
<b>지표정의</b>	○ 당해 기관의 정원 대비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의 비율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지원기능인력 비율 $[(\text{②}/\text{①})\times 100]$ - ① 정원 - ② 지원기능인력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지원기능인력’이란 개인 업무분장상 인사, 총무, 행정, 서무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 개인이 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을 중복 수행할 경우, 지원기능이 50%를 초과하면 지원기능인력으로, 사업기능이 50%를 초과하면 사업기능인력으로 본다(부서기준이 아닌 개인 업무분장 기준인 점에 유의) ○ ‘정원’은 직제규정 상의 정원을 의미한다.			
<b>세 부 평가방법</b>	○ 단계별 평가			
	30% 이하		30% 초과	
	0.5		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b>지 표 명</b>	<b>관리직(팀장급 이상) 비율</b>							
<b>대 분 류</b>	경영시스템	<b>중 분 류</b>	인사·조직관리					
<b>가 중 치</b>	0.5점	<b>지표성격</b>	정량 (하향지표)	<b>평가방법</b> 단계별평가				
<b>지표정의</b>	○ 당해 기관의 정원 대비 관리직 비율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관리직 비율 $[(\textcircled{2})/\textcircled{1})\times 100$ - ① 정원 - ② 관리직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관리직’은 명칭에 관계없이 조직도상의 부서장, 또는 부서장은 아니나 검토 또는 전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업무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직원을 말한다. * 출장/조퇴/휴가 등 단순복무 관련 전결권만 가진 경우는 제외 ○ ‘정원’은 직제규정상의 정원을 의미한다. ○ 관리직 비율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평가함							
<b>세 부 평가방법</b>	○ 단계별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20% 이하</td> <td style="width: 50%;">20% 초과</td> </tr> <tr> <td>0.5</td> <td>0.0</td> </tr> </table> <p>※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p>				20% 이하	20% 초과	0.5	0.0
20% 이하	20% 초과							
0.5	0.0							

<b>지 표 명</b>	<b>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b>																																												
<b>대 분 류</b>	경영시스템		<b>중 분 류</b>	인사·조직관리																																									
<b>가 중 치</b>	1점	<b>지표성격</b>	정량 (상향지표)	<b>평가방법</b>	단계별평가																																								
<b>지표정의</b>	○ 당해 기관의 시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외부전문가 구성비율 및 참여현황을 측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시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구성 및 참여율 (1.0점) - 시험위원회(구성비율 0.25점 + 참여율 0.25점) + 인사위원회(구성비율 0.25점 + 참여율 0.25점) - 각 위원회의 구성비율은 (위원회 별 외부위원수 합계)/(위원회 전체 위원수 합계)로 산정한다. - 각 위원회의 참여율은 (개최 회별 참석 외부위원수 합계)/(개최횟수×외부위원 총수)로 산정한다. ※ 시험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각각 0점 처리. 서면회의는 불인정. 시험위원회의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 ※ 채용/승진 등의 해당 사안이 없어 시험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 실적 미 있는 경우에는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시험위원회는 채용(출제, 면접)과정에서의 위원회 구성을 의미한다. ○ 인사위원회는 승진, 채용, 징계 등 인사 관련 위원회를 의미한다. ○ 개최횟수는 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총 개최횟수를 의미한다.																																												
<b>세 부 평가방법</b>	○ 시험위원회 외부전문가 구성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50%이상</td> <td>40%이상</td> <td>30%이상</td> <td>20%이상</td> <td>20%미만</td> </tr> <tr> <td>0.25</td> <td>0.20</td> <td>0.15</td> <td>0.10</td> <td>0</td> </tr> </table> ○ 시험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율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90%이상</td> <td>80%이상</td> <td>70%이상</td> <td>60%이상</td> <td>50%미만</td> </tr> <tr> <td>0.25</td> <td>0.20</td> <td>0.15</td> <td>0.10</td> <td>0</td> </tr> </table> ○ 인사위원회 외부전문가 구성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50%이상</td> <td>40%이상</td> <td>30%이상</td> <td>20%이상</td> <td>20%미만</td> </tr> <tr> <td>0.25</td> <td>0.20</td> <td>0.15</td> <td>0.10</td> <td>0</td> </tr> </table> ○ 인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율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90%이상</td> <td>80%이상</td> <td>70%이상</td> <td>60%이상</td> <td>50%미만</td> </tr> <tr> <td>0.25</td> <td>0.20</td> <td>0.15</td> <td>0.10</td> <td>0</td> </tr> </table>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0.25	0.20	0.15	0.10	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미만	0.25	0.20	0.15	0.10	0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0.25	0.20	0.15	0.10	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미만	0.25	0.20	0.15	0.10	0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0.25	0.20	0.15	0.10	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미만																																									
0.25	0.20	0.15	0.10	0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0.25	0.20	0.15	0.10	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미만																																									
0.25	0.20	0.15	0.10	0																																									

<b>지 표 명</b>	<b>임·직원 교육실적</b>																								
<b>대 분 류</b>	경영시스템		<b>중 분 류</b>	인사·조직관리																					
<b>가 중 치</b>	1점	<b>지표성격</b>	정량 (상향지표)	<b>평가방법</b>	단계별평가																				
<b>지표정의</b>	○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내부 교육실적을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외부교육실적(0.5점)=직원별 외부교육이수시간 합계/(직원수×15시간) ※ 개인의 외부교육이수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시간으로 봄  ○ 내부교육실적(0.5점)=직원별 내부교육이수시간 합계/(직원수×20시간) ※ 개인의 내부교육이수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시간으로 봄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외부교육 이수시간’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교육청, 기타 민간교육기관 등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실적 및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기관 자체교육은 제외) ○ ‘내부교육 이수시간’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을 의미한다(세미나, 포럼, 워크숍 및 외부강사 초청강연, 외부인를 대상으로 기관이 실시한 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포함한다). ○ 임원 중 비상임 임원은 제외하며, 임원의 교육실적은 전임자의 실적을 포함한다. ○ 직원은 정원 내 인력을 기준으로 개인단위로 평가한다. ○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은 제외하고, 1년 미만 근무자는 월할계산한다.																								
<b>세 부 평가방법</b>	○ 단계별 평가(외부교육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h>90%이상</th> <th>80%이상</th> <th>70%이상</th> <th>60%이상</th> <th>60%미만</th> </tr> <tr> <td>0.50</td> <td>0.40</td> <td>0.30</td> <td>0.20</td> <td>0</td> </tr> </table> ○ 단계별 평가(내부교육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h>90%이상</th> <th>80%이상</th> <th>70%이상</th> <th>60%이상</th> <th>60%미만</th> </tr> <tr> <td>0.50</td> <td>0.40</td> <td>0.30</td> <td>0.20</td> <td>0</td> </tr> </table>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0.50	0.40	0.30	0.20	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0.50	0.40	0.30	0.20	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0.50	0.40	0.30	0.20	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0.50	0.40	0.30	0.20	0																					

<b>지 표 명</b>	<b>자체수입률</b>				
<b>대 분 류</b>	경영시스템		<b>중 분 류</b>	재무관리	
<b>가 중 치</b>	1점	<b>지표성격</b>	정량 (상향지표)	<b>평가방법</b>	목표부여
<b>지표정의</b>	○ 기관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재정자립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총수입액 중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자체수입률 $[(①/②) \times 100]$ - ① 자체수입액 - ② 총수입액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자체수입액'은 총수입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운영비)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자체수입액은 대행사업비, 위탁금,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등을 포함하되, 예산목이 출연금(설립지자체 외의 지자체 출연금 포함)일 경우는 제외한다. ○ 한시적으로 증가한 수입 혹은 출연금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여 평가위원이 결정				
<b>세 부 평가방법</b>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자체수입률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b>지 표 명</b>	<b>일반관리비충당율</b>				
<b>대 분 류</b>	경영시스템		<b>중 분 류</b>	재무관리	
<b>가 중 치</b>	1점	<b>지표성격</b>	정량 (상향지표)	<b>평가방법</b>	목표부여
<b>지표정의</b>	○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관의 자체수입이 행정운영경비를 충당하는 일반관리비충당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일반관리비충당율 $[(①/②) \times 100]$ - ① 자체수입액 - ② 행정운영경비(인건비+경비)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자체수입액'은 총수입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자체수입액에는 대행사업비, 위탁금,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 '행정운영경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와 경비를 의미하며, 매출원가에 포함된 인건비와 경비는 제외한다. - 「2020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세출예산과목 과목해소 예산과목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인건비(100)와 경비(200)를 합하여 산정한다.				
<b>세 부 평가방법</b>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b>지 표 명</b>	<b>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b>																		
<b>대 분 류</b>	경영시스템		<b>중 분 류</b>	예산관리															
<b>가 중 치</b>	0.5점	<b>지표성격</b>	정량	<b>평가방법</b>	목표부여/단계별평가														
<b>지표정의</b>	○ 복리후생비 집행실적 및 공개 여부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관리를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복리후생비 집행을 $[(\text{②}/\text{①}) \times 100]$ (0.2점) - ① 복리후생비 편성액 - ② 복리후생비 집행액 ○ 복리후생비 공개실적 (0.3점) - 자체 경영공시를 통한 복리후생비 공개 여부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복리후생비 편성액’은 사업계획 시 편성된 복리후생비 항목을 의미한다(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복리후생비 집행액’은 복리후생비 항목별 연간 집행금액을 의미한다.																		
<b>세 부 평가방법</b>	○ 달성도 평가(복리후생비 집행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준치</th> <th>최고목표</th> <th>최저목표</th> <th>실적</th> <th>달성도</th> </tr> </thead> <tbody> <tr> <td></td> <td>기준치*110%</td> <td>기준치*50%</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최고목표가 100%(복리후생비집행율 기준) 이상일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단계별 평가(복리후생비 공개 여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공개</th> <th>비공개</th> </tr> </thead> <tbody> <tr> <td>0.3</td> <td>0</td> </tr> </tbody> </table> * 기관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총액 공개가 아닌 복리후생비 항목별 세부내역 공개인 경우만 인정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공개	비공개	0.3	0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공개	비공개																		
0.3	0																		



<b>지 표 명</b>	<b>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b>																								
<b>대 분 류</b>	경영시스템		<b>중 분 류</b>	예산관리																					
<b>가 중 치</b>	0.5점	<b>지표성격</b>	정량	<b>평가방법</b>	목표부여/단계별평가																				
<b>지표정의</b>	○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및 공개 여부 등 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리수준을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업무추진비 집행을 $[(\text{②}/\text{①}) \times 100]$ (0.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업무추진비 편성액</li> <li>- ② 업무추진비 집행액</li> </ul> ○ 업무추진비 공개실적 (0.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경영공시를 통한 업무추진비 공개 주기</li> </ul>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업무추진비 편성액'은 당해연도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의미한다(추경예산 포함). ○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당해연도에 실제로 집행된 예산을 의미한다.																								
<b>세 부 평가방법</b>	○ 달성도 평가(업무추진비 집행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준치</th> <th>최고목표</th> <th>최저목표</th> <th>실적</th> <th>달성도</th> </tr> </thead> <tbody> <tr> <td></td> <td>기준치*110%</td> <td>기준치*5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최고목표가 100%(업무추진비집행율 기준) 이상일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p> ○ 단계별 평가(업무추진비 공개 주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월별</th> <th>분기별</th> <th>반기별</th> <th>연1회</th> <th>미공개</th> </tr> </thead> <tbody> <tr> <td>0.25</td> <td>0.20</td> <td>0.15</td> <td>0.10</td> <td>0.00</td> </tr> </tbody> </table> <p>* 기관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되, 총액 공개가 아닌 세부내역 공개인 경우만 인정함.</p> <p>※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p>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1회	미공개	0.25	0.20	0.15	0.10	0.00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1회	미공개																					
0.25	0.20	0.15	0.10	0.00																					

<b>지 표 명</b>	<b>조달계약 실적</b>				
<b>대 분 류</b>	경영시스템		<b>중 분 류</b>	예산관리	
<b>가 중 치</b>	0.5점	<b>지표성격</b>	정량 (상향지표)	<b>평가방법</b>	목표부여
<b>지표정의</b>	○ 기관의 전체 계약금액 중 조달청에서 계약한 금액(조달청을 통한 수의 계약 포함)의 비중을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조달계약비율 $[(①/②) \times 100]$ (0.5점) - ① 조달계약금액 - ② 총 계약액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조달계약금액'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의계약과 조달계약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총계약액'은 500만원 이상 계약액의 총 합(수의계약 포함)을 의미한다.				
<b>세 부 평가방법</b>	○ 달성도 평가				
	<b>기준치</b>	<b>최고목표</b>	<b>최저목표</b>	<b>실적</b>	<b>달성도</b>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조달계약비율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b>지 표 명</b>	<b>이월금 적정 처리</b>												
<b>대 분 류</b>	경영시스템		<b>중 분 류</b>	재무·예산관리									
<b>가 중 치</b>	0.5점	<b>지표성격</b>	정량	<b>평가방법</b>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이월된 예산의 합리적 운영 등 이월예산의 관리수준을 평가한다.												
<b>측정산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금 편성 (0.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잉여금 '20년도 세입예산 편성 여부</li> </ul> </li> <li>○ 이월금 집행 (0.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사업 세출예산 편성 여부</li> </ul> </li> </ul>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금'은 '19년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의미함</li> <li>○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함</li> <li>○ 순세계잉여금을 '20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기관의 예산 요구액을 조정하였는지를 평가함</li> <li>○ 이월예산의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여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함</li> </ul>												
<b>세 부 평가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성도 평가(이월금 편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적정</td> <td style="width: 50%;">부적정</td> </tr> <tr> <td>0.25</td> <td>0</td> </tr> </table> </li> <li>○ 달성도 평가(이월금 집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적정</td> <td style="width: 50%;">부적정</td> </tr> <tr> <td>0.25</td> <td>0</td> </tr> </table> </li> </ul> <p>※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p>					적정	부적정	0.25	0	적정	부적정	0.25	0
적정	부적정												
0.25	0												
적정	부적정												
0.25	0												

III

사회적 가치

지 표 명	일자리 창출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일자리 확대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목표달성도/절대평가
지표정의	○ 청년 의무고용비율 달성도 등 당해 기관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내용	<p>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운용계획(중장기 포함)의 적정성</li> <li>- 신규채용인원의 연도별 증감추세</li> <li>- 신규채용 시 정규직 채용 여부</li> <li>- 결원 대비 신규채용비율 등</li> </ul> <p>②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선택제 활용 등 일·가정 양립 및 직원 편의 제고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여부</li> <li>- 실제 근로자 이용편의 제공노력 및 이용실적, 유연근무 활용실태, 남녀 육아휴직 등 기관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li> </ul>				
세 부 평가방법	<p>○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은 평가대상연도에 각 기관에서 실제로 시행하여 성과가 도출된 정책을 토대로 각 기관이 소명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p> <p>○ 대상자 부재, 기관 여건 등으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도 구축 여부로 평가한다.</p>				

<b>지 표 명</b>	<b>일자리 질 개선</b>				
<b>대 분 류</b>	사회적 가치		<b>중 분 류</b>	일자리 확대	
<b>가 중 치</b>	2점	<b>지표성격</b>	정성/정량	<b>평가방법</b>	절대평가/단계별평가
<b>지표정의</b>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b>평가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심의기구 구성 여부, 구성의 적절성, 전환심의기구를 통한 전환의결 여부, 전환절차 조기 이행 정도, 노·사 협의 및 갈등방지 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li> </ul> </li> <li>○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심의위원회 조기 구성(0.5점)</li> <li>- 정규직 전환 조기 의결(0.5점)</li> <li>※ 정규직 전환의결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li> <li>※ 기간제근로자가 없거나 전환대상(의결기준)이 없는 경우 평가 제외</li> </ul> </li> <li>○ (가점) 정규직 전환대상자 전원 인사발령 완료 여부 (0.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전환대상자 인사발령 여부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li> </ul> </li> <li>○ (가점)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의결(전환심의기구 의결) (0.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의결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li> </ul> </li> <li>○ (감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상 결정절차의 적정성 (-0.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결된 전환대상의 수가 ‘공공부문 고용개선시스템’에 잠정 입력한 전환계획 인원수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또는 기타 결정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감점</li> </ul> </li> </ul>				
<b>세 부 평가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조기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0.5점), 11월(0.4점), 12월(0.2점), 미구성(0.0점)</li> </ul> </li> <li>○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조기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0.5점), 12월(0.3점), 미구성(0.0점)</li> </ul> </li> </ul>				

<b>지 표 명</b>	<b>고객 및 주민참여</b>				
<b>대 분 류</b>	사회적 가치		<b>중 분 류</b>	사회적 책임	
<b>가 중 치</b>	1점	<b>지표성격</b>	정성	<b>평가방법</b>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고객 및 주민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b>평가내용</b>	<p>① 고객 및 주민 참여를 위한 노력과 성과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고객 및 주민의견 수렴노력 및 환류</li> <li>- 고객 및 주민의견 분석 및 경영계획 반영 여부</li> <li>- 다양한 통로를 통한 고객·주민의견 수렴노력과 성과</li> <li>- 고객·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노력</li> </ul>				
<b>세 부 평가방법</b>	○ 고객·주민의 참여 보장 확대를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수준, 회의체 및 협의체 운영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노력과 성과, 경영에의 반영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b>지 표 명</b>	<b>윤리경영</b>				
<b>대 분 류</b>	사회적 가치		<b>중 분 류</b>	사회적 책임	
<b>가 중 치</b>	1점	<b>지표성격</b>	정성	<b>평가방법</b>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 부패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b>평가내용</b>	<p>① 윤리경영체제의 적절성 (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헌장·윤리강령·구체적인 행동지침 등 윤리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및 기준의 구비 여부</li> <li>-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사항('18.3) 반영하여 기관의 행동강령 개정 여부</li> <li>- 윤리경영 실천체계와 기관의 미션 및 비전체계 연계의 적절성</li> <li>- 기관장이 공익적 책임 인식과 윤리경영 실천의 구체적 추진노력</li> <li>- 윤리경영 실천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프로세스 마련 여부</li> <li>- 실질적인 내부감사시스템 작동 여부(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등)</li> <li>- 클린센터, 옴브즈만, 내부고발제도 등 내부관리시스템 운영 및 성과</li> <li>- 성범죄 방지 조치노력</li> </ul> <p>② 부패방지와 청렴을 위한 노력 (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근절교육(세미나 포함) 등 비리·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li> <li>- 주기적인 윤리교육 등 임·직원의 윤리성 제고노력</li> <li>- 거래 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존재 유무</li> <li>- 도덕적 해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언론 등에 물의 야기 여부</li> </ul>				
<b>세 부 평가방법</b>	<p>○ 확인결과 관리소홀, 임·직원 비리·부패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p> <p>○ 대내·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p>				

<b>지 표 명</b>	<b>노사상생</b>				
<b>대 분 류</b>	사회적 가치		<b>중 분 류</b>	사회적 책임	
<b>가 중 치</b>	1점	<b>지표성격</b>	정성	<b>평가방법</b>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조직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동기 부여 및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b>평가내용</b>	<p>① 노사화합을 위한 노력 및 성과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 상생을 위한 합리적 목표 설정 및 실천 여부</li> <li>- 노사 간 의사소통채널 마련 여부</li> <li>- 노사 간 의사소통채널의 정례화 및 운영 여부</li> <li>- 노사 간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합리한 복지·처우 등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경영개선에 반영한 실적</li> <li>- 노사갈등 또는 노사분쟁(파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및 결과</li> <li>- 노사분쟁 또는 파업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나 물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 및 결과</li> <li>- 단체교섭, 노사협의회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li> <li>- 노조전임자 또는 타임오프제 기준 준수 여부</li> </ul>				
<b>세 부 평가방법</b>	<p>○ 노사상생은 기관규모(직원수 등)를 고려하여 평가한다.</p> <p>○ 불법노사분쟁 발생시 사회적 피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점할 수 있다.</p>				



<b>지 표 명</b>	<b>시설 · 안전관리</b>				
<b>대 분 류</b>	사회적 가치		<b>중 분 류</b>	사회적 책임	
<b>가 중 치</b>	1점	<b>지표성격</b>	정성	<b>평가방법</b>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b>평가내용</b>	<p>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 대응력 제고 (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부 재난안전교육 실시 여부</li> <li>- 재난안전상황별 대응훈련(자체,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포함)</li> <li>- 개인별 역할 및 책임 부여 등</li> <li>- 재난안전상황 발생시 직원들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노력의 적정성</li> <li>-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매뉴얼 작성·활용 여부</li> </ul> <p>② 재난·안전 관리역량 (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관련 법적 의무사항 이행, 시설 사전점검, 외주업체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의 적정성</li> <li>- 사고 발생 후 신속 전파 및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활동의 적정성, 사고 처리·보상,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포함하는 사고 이력관리를 통한 재발방지노력 등 안전사고 사후처리활동의 적정성</li> <li>-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li> <li>- 소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현지시정 등) 이행 여부</li> </ul>				
<b>세 부 평가방법</b>	○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양과 질, 유형별 모의훈련실적, 사업장의 성격 및 노후 정도, 직원 인터뷰 결과,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b>지 표 명</b>	<b>지역사회 공헌</b>				
<b>대 분 류</b>	사회적 가치		<b>중 분 류</b>	사회적 책임	
<b>가 중 치</b>	1점	<b>지표성격</b>	정성	<b>평가방법</b>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지역 내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과 기여도를 평가한다.				
<b>평가내용</b>	<p>① 지역경제 공헌 및 지역의 사회·문화·환경 등의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 실적 (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성과</li> <li>- 특성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노력 여부</li> <li>-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자치단체 특수시책 참여</li> <li>- 정책사업 연계추진을 위한 연구개발</li> </ul> <p>②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을 의미함</li> </ul>				
<b>세 부 평가방법</b>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공사 제외)의 1% 이상을 구매하였을 때 적정한 것으로 본다.				

<b>지 표 명</b>	<b>사회적 약자 배려</b>				
<b>대 분 류</b>	사회적 가치		<b>중 분 류</b>	사회적 책임	
<b>가 중 치</b>	1점	<b>지표성격</b>	정성/정량	<b>평가방법</b>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 제공 및 서비스 제공활동을 평가한다.				
<b>평가내용</b>	<p>① 사회적 약자 관리시스템 (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료시설의 무료·감면 수혜자수(금액) 확대노력 및 성과</li> <li>-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사후평가</li> <li>-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li> <li>-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고용노력 및 실적</li> </ul> <p>② 사회적약자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대상품목의 총구매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0.2점)</li> <li>- 총구매액(공사 제외) 대비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실적(0.1점)</li> <li>- 총구매액(공사 제외)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0.1점)</li> <li>- 구매총액 대비 여성기업 생산품 구매실적(0.1점)</li> </ul>				
<b>세 부 평가방법</b>	<p>○ 사회적약자기업은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여성기업을 의미함</p> <p>○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은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1%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최고점을 부여한다.</p> <p>○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공사 제외)의 1% 이상을 구매하였을 때 최고점을 부여한다.</p> <p>○ 여성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은 용역·물품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이상을 구매하였을 때 최고점을 부여한다.</p>				

<b>지 표 명</b>	<b>친환경 경영</b>				
<b>대 분 류</b>	사회적 가치		<b>중 분 류</b>	사회적 책임	
<b>가 중 치</b>	1점	<b>지표성격</b>	정성	<b>평가방법</b>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을 축소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b>평가내용</b>	<p>① 녹색제품 우선 구매노력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인 물품구매,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구매,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녹색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는 경우 절차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인 물품구매는 1) 의무구매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 2)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 3) 녹색제품 구매로 구성됨</li> <li>-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구매는 1) 녹색제품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2)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을 구매토록 추진 → 3) 용역업체에서 녹색제품 구매로 구성됨</li> <li>- 공공기관 발주공사시 녹색건설자재 구매(사용)절차는 1) 녹색건설자재 우선 적용 검토 → 2)공사설계도서 반영으로 구성됨</li> </ul> </li> </ul>				
<b>세 부 평가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기준은 2017.11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중 '3. 녹색제품 구매절차'에 따른다.</li> <li>○ 녹색제품이란 '환경표지 인증' 혹은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의미한다.</li> </ul>				

<b>지 표 명</b>	<b>채용비리 방지</b>																																																																																						
<b>대 분 류</b>	사회적 가치		<b>중 분 류</b>	사회적 책임																																																																																			
<b>가 중 치</b>	(-1.5점)	<b>지표성격</b>	정량	<b>평가방법</b>	단계별 평가																																																																																		
<b>지표정의</b>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노력과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b>평가내용</b>	<p>○ 채용비리 발생은 2018.1.1. 이후 법령을 위반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경우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위반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기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li> </ul> <p>○ 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적사항은 2017.11.1. 이후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말한다.</p> <p>○ 자체 인사규정 정비는 정관, 이사회 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에 채용비리와 관련한 임직원의 징계 및 직위해제(직무정지)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393 2018.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인사규정에 “채용비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직원의 채용비리를 처벌 가능하면 인정</li> </ul>																																																																																						
<b>세 부 평가방법</b>	<p>○ 채용비리 발생 여부 (-0.5점) : 외부기관 지적 건수로 평가</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미지적</td> <td>지적 1건당</td> <td>지적 5건 이상</td> </tr> <tr> <td>점수</td> <td>0</td> <td>-0.1</td> <td>-0.5</td> </tr> </table> <p>○ 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적사항 이행 여부(-0.5점) : 미이행 건수로 평가</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이행완료</td> <td>미이행 1건당</td> <td>미이행 5건 이상</td> </tr> <tr> <td>점수</td> <td>0</td> <td>-0.1</td> <td>-0.5</td> </tr> </table> <p>○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 여부 (-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비리 적발 기관(-0.5점)</li> </ul>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3월까지 정비</td> <td>4월 정비</td> <td>5월 정비</td> <td>6월 정비</td> <td>7월이후 정비</td> </tr> <tr> <td>합계</td> <td>0</td> <td>-0.10</td> <td>-0.20</td> <td>-0.30</td> <td>-0.50</td> </tr> <tr> <td>징계 임원</td> <td>0</td> <td>-0.03</td> <td>-0.06</td> <td>-0.08</td> <td>-0.13</td> </tr> <tr> <td>징계 직원</td> <td>0</td> <td>-0.02</td> <td>-0.04</td> <td>-0.07</td> <td>-0.12</td> </tr> <tr> <td>직위 임원</td> <td>0</td> <td>-0.03</td> <td>-0.06</td> <td>-0.08</td> <td>-0.13</td> </tr> <tr> <td>해제 직원</td> <td>0</td> <td>-0.02</td> <td>-0.04</td> <td>-0.07</td> <td>-0.12</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비리 미적발 기관(-0.5점)</li> </ul>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4월까지 정비</td> <td>5월 정비</td> <td>6월 정비</td> <td>7월이후 정비</td> </tr> <tr> <td>합계</td> <td>0</td> <td>-0.10</td> <td>-0.20</td> <td>-0.50</td> </tr> <tr> <td>징계 임원</td> <td>0</td> <td>-0.03</td> <td>-0.06</td> <td>-0.13</td> </tr> <tr> <td>징계 직원</td> <td>0</td> <td>-0.02</td> <td>-0.04</td> <td>-0.12</td> </tr> <tr> <td>직위 임원</td> <td>0</td> <td>-0.03</td> <td>-0.06</td> <td>-0.13</td> </tr> <tr> <td>해제 직원</td> <td>0</td> <td>-0.02</td> <td>-0.04</td> <td>-0.12</td> </tr> </table> <p>* 이행완료 시점은 규정 시행일 또는 이사회 의결일로 한다.</p>					구분	미지적	지적 1건당	지적 5건 이상	점수	0	-0.1	-0.5	구분	이행완료	미이행 1건당	미이행 5건 이상	점수	0	-0.1	-0.5	구분	3월까지 정비	4월 정비	5월 정비	6월 정비	7월이후 정비	합계	0	-0.10	-0.20	-0.30	-0.50	징계 임원	0	-0.03	-0.06	-0.08	-0.13	징계 직원	0	-0.02	-0.04	-0.07	-0.12	직위 임원	0	-0.03	-0.06	-0.08	-0.13	해제 직원	0	-0.02	-0.04	-0.07	-0.12	구분	4월까지 정비	5월 정비	6월 정비	7월이후 정비	합계	0	-0.10	-0.20	-0.50	징계 임원	0	-0.03	-0.06	-0.13	징계 직원	0	-0.02	-0.04	-0.12	직위 임원	0	-0.03	-0.06	-0.13	해제 직원	0	-0.02	-0.04	-0.12
구분	미지적	지적 1건당	지적 5건 이상																																																																																				
점수	0	-0.1	-0.5																																																																																				
구분	이행완료	미이행 1건당	미이행 5건 이상																																																																																				
점수	0	-0.1	-0.5																																																																																				
구분	3월까지 정비	4월 정비	5월 정비	6월 정비	7월이후 정비																																																																																		
합계	0	-0.10	-0.20	-0.30	-0.50																																																																																		
징계 임원	0	-0.03	-0.06	-0.08	-0.13																																																																																		
징계 직원	0	-0.02	-0.04	-0.07	-0.12																																																																																		
직위 임원	0	-0.03	-0.06	-0.08	-0.13																																																																																		
해제 직원	0	-0.02	-0.04	-0.07	-0.12																																																																																		
구분	4월까지 정비	5월 정비	6월 정비	7월이후 정비																																																																																			
합계	0	-0.10	-0.20	-0.50																																																																																			
징계 임원	0	-0.03	-0.06	-0.13																																																																																			
징계 직원	0	-0.02	-0.04	-0.12																																																																																			
직위 임원	0	-0.03	-0.06	-0.13																																																																																			
해제 직원	0	-0.02	-0.04	-0.12																																																																																			

(2) 고유사업 평가지표 (공통 배점: 15점)

**IV** **경영성과**

지 표 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고객만족 성과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기관의 외부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객만족도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당해연도 평가 (70점 만점) - 최고: 100점 - 최저: 0점  ②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 (30점 만점) - 최고목표: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 - 최저목표: 0점  ③ 총 평점 - 평점 = $\frac{\text{실적}}{100\text{점}} \times 70\text{점} + \frac{\text{실적}}{\text{전년도 실적} + (100\text{점} - \text{전년도 실적}) \times 10\%} \times 30\text{점}$				
세 부 평가방법	○ 전년도 실적이 없을 경우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개선도 평가 제외). ○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개선도 부분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표본이 25표본 미만이거나, 기관의 여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 ○ PSCI모델 등 공공부문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할 것을 권장함				

<b>지 표 명</b>	<b>고객만족 제고 노력</b>				
<b>대 분 류</b>	경영성과		<b>중 분 류</b>	고객만족 성과	
<b>가 중 치</b>	5점	<b>지표성격</b>	정성	<b>평가방법</b>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당해기관의 내부 및 외부고객 만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b>평가내용</b>	<p>① 고객관리 및 고객지원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결과의 적정성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전략계획 수립 여부</li> <li>- 관련 내부규정 제도화</li> <li>- 고객관리(지원) 전담부서 및 인력확보의 적정성</li> <li>- 고객만족(CS) 교육 실적</li> </ul> <p>② 고객만족경영 관련 인프라 구축의 적정성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만족경영 계획 수립의 적정성</li> <li>-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수립 여부</li> <li>- 고객중심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li> <li>- 로드맵 등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모니터링 및 환류 등</li> </ul> <p>③ 내부 구성원 만족제고를 위한 노력 (1.0점)</p>				
<b>세 부 평가방법</b>	○ 내·외부 고객의 만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정책준수 평가지표 (공통 배점: 5점)

**V** **정책준수**

① 공공기관 정책 준수 (2점)

지 표 명	인건비인상률 준수				
대 분 류	정책준수		중 분 류	공공기관 정책준수	
가 중 치	0.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① '20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0.3점) ② '19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0.1점) ③ '18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0.1점)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2020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8% 범위 내에서 인상 ○ 2019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8% 범위 내에서 인상 ○ 2018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6% 범위 내에서 인상 * 2018년 총인건비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2019년 총인건비 준수 여부를 0.2점으로 하고, 2020년 총인건비 준수 여부를 0.3점으로 함. 또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은 제외				
세 부 평가내용	○ 점수: 기준 준수(만점), 기준 초과(0점) ○ 총인건비인상률은 해당연도 만근자와 직전년도 만근자의 인건비(2개년 도 만근자) 총액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 퇴직자, 장기교육 및 휴직자, 신규입사자, 승진자, 기간직 등 제외 ○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소 급적용 가능) 및 구제역 방제 등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증빙 서류 확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은 예외(제외) * 단, 단년도 특이소요인 경우 다음연도 인상률 산정시 초과분은 제외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11.11.28)”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 직 전환·선택적복지비 지급·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 가분은 제외 ○ 기관 신설 등에 따라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연도 평가는 공공기관 정책준수 내에서 총점환산 적용 $\text{총점환산 득점} = \frac{\text{해당지표들을 제외한 득점}}{2 - \text{해당지표들의 가중치}} \times \text{해당지표의 가중치}$ ○ 호봉승급분이 총인건비(퇴직자인건비 제외)의 1.4% 이내 여부도 평가 ※ 인위적인 급여테이블 조작성은 없었으나, 인력분포 상 불가피하게 승급 인력이 많아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1.4%를 초과한 경우는 예외 인정				



<b>지 표 명</b>	<b>경영평가 성과급 지급</b>								
<b>대 분 류</b>	정책준수		<b>중 분 류</b>	공공기관 정책준수					
<b>가 중 치</b>	0.5점	<b>지표성격</b>	정량	<b>평가방법</b>	단계별평가				
<b>지표정의</b>	○ 경영평가 성과급 운영이 정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경영평가 성과급의 적정 운영 여부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률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li> <li>-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을 결정</li> <li>- 기관장은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되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li> <li>※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li> </ul> </li> <li>○ '20년도 중 입사자는 '20년('19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19년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직전년도 지급률로 월할계산하여 지급</li> </ul> </li> <li>○ 성과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li> </ul>								
<b>세 부 평가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b>적정</b></td> <td style="width: 50%;"><b>부적정</b></td> </tr> <tr> <td>0.5</td> <td>0.0</td> </tr> </table> </li> <li>※ 성과급 지급대장을 확인하고, 나눠먹기식 배분사실이 있는 경우 0점 처리</li> <li>○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지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따른다.</li> </ul>					<b>적정</b>	<b>부적정</b>	0.5	0.0
<b>적정</b>	<b>부적정</b>								
0.5	0.0								

<b>지 표 명</b>	<b>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b>				
<b>대 분 류</b>	정책준수		<b>중 분 류</b>	공공기관 정책준수	
<b>가 중 치</b>	0.5점	<b>지표성격</b>	정량	<b>평가방법</b>	단계별평가
<b>지표정의</b>	○ 중앙부처 감사, 지자체 감사 등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건수 및 적정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이행 여부(0.5점에서 미 이행건수 및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감점방식 적용)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최근 3년간 외부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의미한다. - 다만, 주의 등 기관에서 후속조치(추진)사항을 감사시행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없는 지적사항은 건수에서 제외한다.				
<b>세 부 평가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결과 지적사항 미이행 건수 : 0 ~ -0.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완료(0.25점), 미이행 1건당 -0.1점, 미이행 5건 이상: -0.25점</li> </ul> </li> <li>○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 0 ~ -0.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완료(0.25점), 일부이행(-0.1 ~ -0.15점), 이행부진(-0.2 ~ -0.25점)</li> <li>※ 이행 정도에 따라 적의 점수 부여</li> <li>- 이행구간범위: 이행완료(이행률 100%), 일부이행(이행률 50%이상), 이행부진(이행률 50%이하)인 경우로 구간을 구분하여 이행구간 범위 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li> <li>※ 이행률(%) : 전기 평가 시 미이행건수를 분모로 하되, 이후 추가로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분모에 합산하고, 이행실적(분자)을 분모로 나눈 비율</li> <li>- 이행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간 내 이행 여부로 평가(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li> <li>- 이행기한이 없는 경우 이행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를 감안하여 평가(이행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개월 정도 시한을 주고 진행상황에 따라 적의 점수 부여)</li> <li>※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누락한 경우 감사결과 지적사항 준수 여부에 관계없이 본 지표에 대해 0점으로 평정함.</li> <li>- 당해기관에 대한 외부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공공기관 정책준수 내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한다.</li> </ul> </li> </ul>				

<b>지 표 명</b>	<b>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준수</b>				
<b>대 분 류</b>	정책준수		<b>중 분 류</b>	공공기관 정책준수	
<b>가 중 치</b>	0.5점	<b>지표성격</b>	정량	<b>평가방법</b>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 개별공시 및 제33조 통합공시 기준에 따른 공시여부를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공시항목 및 자료입력기한 준수 여부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p>○ 공시항목, 자료입력기한 등은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 제33조 및 「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와 관련 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p> <p>- 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성과계약 달성정도가 없는 경우 “성과계약서 작성 대상기관이 아님(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적용 제외대상일 경우)”으로 공시 시 공시한 것으로 인정  ※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성과계약서 작성 대상기관이 아님”으로 공시하지 않았거나, 대상기관임에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달성정도를 평가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 누락으로 간주</p> <p>- 법 제32조 제1항 제6호: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이 아님(대상기관이 아닌 사유 적시)”으로 공시 시 공시한 것으로 인정  ※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이 아님”으로 공시하지 않았거나, 대상기관임에도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 누락으로 간주</p> <p>- 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외부기관 감사 결과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공시 시 공시한 것으로 인정  ※ 외부기관 감사 결과가 없음에도 “해당없음”으로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 누락으로 간주</p>				
<b>세 부 평가내용</b>	<p>① 법 제32조에 따른 개별공시 여부(0.3점)</p> <p>-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시기 내에 모두 공시했을 경우: 0.3점</p> <p>-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시하였으나,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시기를 어겼을 경우: 0.2점</p> <p>-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였을 경우: 0점</p> <p>② 법 제33조에 따른 통합공시 여부(0.2점)</p> <p>-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시기 내에 모두 공시했을 경우: 0.2점</p> <p>-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시하였으나, 제1항에 따른 시기를 어겼을 경우: 0.1점</p> <p>-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였을 경우: 0점</p>				

<b>지 표 명</b>	<b>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b>																
<b>대 분 류</b>	정책준수		<b>중 분 류</b>	공공기관 정책준수													
<b>가 중 치</b>	-1점	<b>지표성격</b>	정량	<b>평가방법</b>	단계별평가												
<b>지표정의</b>	○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입사지원서 인적사항 요구 금지 여부(-0.5점) ○ 블라인드 면접 실시 여부(-0.5점)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블라인드 채용이란 2017.9.1.부터 신규채용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7월)에 근거하여 도입여부를 평가한다.																
<b>세 부 평가내용</b>	○ 입사지원서 인적사항 요구 금지 여부(-0.5점) - 인적사항 요구 항목수로 평가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미요구</td> <td>1개 요구</td> <td>2개 요구</td> <td>3개 요구</td> <td>4개이상요구</td> </tr> <tr> <td>점수</td> <td>0</td> <td>-0.2</td> <td>-0.3</td> <td>-0.4</td> <td>-0.5</td> </tr> </table>					구분	미요구	1개 요구	2개 요구	3개 요구	4개이상요구	점수	0	-0.2	-0.3	-0.4	-0.5
	구분	미요구	1개 요구	2개 요구	3개 요구	4개이상요구											
	점수	0	-0.2	-0.3	-0.4	-0.5											
	※ 인적사항 요구 금지항목 ① 학력, ② 출신지역, ③ 가족관계, ④ 신체적 조건, ⑤ 연령 등																
○ 블라인드 면접 실시 여부(-0.5점)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여부(-0.3점)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미제공</td> <td>제공</td> </tr> <tr> <td>점수</td> <td>0</td> <td>-0.3</td> </tr> </table>					구분	미제공	제공	점수	0	-0.3							
구분	미제공	제공															
점수	0	-0.3															
※ 면접위원에게 제공한 서류로 평가																	
- 면접관 사전 교육 여부(-0.2점)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교육 실시</td> <td>교육 미실시</td> </tr> <tr> <td>점수</td> <td>0</td> <td>-0.2</td> </tr> </table>					구분	교육 실시	교육 미실시	점수	0	-0.2							
구분	교육 실시	교육 미실시															
점수	0	-0.2															
※ 면접계획에 면접관 교육시간(30분 이상)이 있는 지 평가																	

<b>지 표 명</b>	<b>근로시간 단축 준수</b>				
<b>대 분 류</b>	정책준수		<b>중 분 류</b>	공공기관 정책준수	
<b>가 중 치</b>	-1점	<b>지표성격</b>	정량	<b>평가방법</b>	단계별평가
<b>지표정의</b>	○ 1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18.3월)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b>측정산식</b>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시간 위반 시 감점(최대 -1점)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주 최대 근로시간은 '18.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li> <li>○ 근로기준법 위반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li> </ul>				
<b>세 부 평가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주 최대 근로시간 위반(최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당 근로시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시정조치 완료(-0.1점)</li> <li>- 위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못해 시정기간 연장조치를 받고 연장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0.3점)</li> <li>-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 등 유죄판결(1심 기준)을 받은 경우(-1.0점)</li> </ul> </li> <li>※ 주당 최대 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각 사건마다 시정조치에 따른 감점 점수를 합산한 값을 전체 감점 점수로 함. 단 감점의 합이 -1점을 넘는 경우 -1점을 최대 감점 점수로 한다.</li> </ul>				

② 지자체 정책 준수 여부 (3점)

지 표 명	자치단체 정책준수				
대 분 류	정책준수		중 분 류	지방자치단체 정책 준수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혼합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당해 기관의 체계적인 노력과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 권장정책 이행 여부는 정성지표로 평가하며, 적정성 여부는 증빙자료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흥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항목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p>○ ‘시흥시 지자체 권장시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① 시의회 지적사항 개선 여부 (0.2점)</p> <p>② 출연기관 내부규정 정비 노력 (0.2점)</p> <p>③ 이사회 소집 및 안건 통지기간 준수 (0.1점)</p> <p>④ 출연기관 인사운영기준(‘18. 9월 개정) 준수 (0.5점)</p> <p>- 채용계획 통보, 채용정보시스템 등록,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 등</p> <p>⑤ 시흥시 출연기관 보수 등 운영체계 이행 및 각종 협의사항 적정 이행 여부 (1점)</p> <p>⑥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1점)</p> <p>○ ①~⑤번 권장 시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정책준수 실태를 평가한다. (2점)</p> <p>○ ⑥번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1점)</p> <p>경영평가단이 제시한 중점개선사항의 이행 및 추진계획 반영여부를 평가한다.</p> <p>평가산식 : 후속조치 이행율* × 배점</p> <p>이행율* = (조치요구사항 이행 및 추진계획 반영/조치요구건수)×100</p>				

### 3. (재)시흥산업진흥원 사업부문 평가지표

#### 1) 개별 사업부문 평가지표체계

구분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고유 사업 평가 지표	IV. 경영성과 (65점)	기관 고유사업 (혼합 / 50)	· 기업협력네트워크 구축 운영실적	10	혼합
			·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실적	20	혼합
			· 산업정책 개발 및 적용실적	10	혼합
			· 소공인지원센터 장비이용 실적	5	혼합
			· B2B 시스템 운영성과	5	혼합
고유사업지표 개별 소계				50점	

## 2) 개별 사업부문 평가지표 지표정의서

### (1) 고유사업 평가지표 (개별 배점: 50점)

지 표 명	기업협력네트워크 구축 운영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재)시흥산업진흥원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혼합	평가방법	목표부여/ 절대평가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기업 및 산업간의 교류협력 실적을 측정하여 지역 네트워크 활용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① 교류 횟수 (35%) ② 워크숍 등 참여자 수 (35%) ③ 기업협력네트워크 구축 운영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3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교류횟수’는 당해 기관의 주관으로 기업 및 산업간 협약·워크숍·세미나·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2개 이상 기관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행사를 개최한 횟수를 의미함. ○ ‘워크숍 등 참여자 수’는 당해 기관의 주관으로 기업 및 산업 간의 협약·워크숍·세미나·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2개 이상 기관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개최된 행사에 참여한 인원수를 의미함.				
세 부 평가방법	※ ①~②번 정량지표 측정산식 평점 = 목표달성도 x 100점 $\text{목표달성도 평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times 100\text{점}$ * 최고목표 : 기준치 실적 x 110% 최저목표 : 기준치 실적 x 50% ※ 기업협력네트워크 구축 운영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세부 평가내용 - 사업의 추진 및 내용의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노력 - 사업 추진의 활성화, 환류 및 개선 노력 -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이행 노력 등 * 평가 방법 - 9등급의 정성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				



<b>지 표 명</b>	<b>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실적</b>				
<b>대 분 류</b>	경영성과		<b>중 분 류</b>	(재)시흥산업진흥원	
<b>가 중 치</b>	20점	<b>지표성격</b>	혼합	<b>평가방법</b>	목표부여/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당해 기관에서 실시한 기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운영횟수, 만족도를 평가한다.				
<b>측정산식</b>	①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수 (35%) ② 기업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만족도 (35%) ③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30%)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당해 기관에서 직접 지원한 프로그램의 횟수를 의미함. ○ ‘참여기업 만족도’는 기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만족도를 의미함. ○ ‘노력 및 적정성’은 사업홍보(공문발송, 언론보도, SNS 실적) 및 사업 참여기업의 경쟁률을 의미함.				
<b>세 부 평가방법</b>	※ ①~②번 정량지표 측정산식 $\text{평점} = \text{목표달성도} \times 100\text{점}$ $\text{목표달성도 평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times 100\text{점}$ * 최고목표 : 기준치 실적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실적 × 50%  ※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세부 평가내용 - 사업의 추진 및 내용의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노력 - 사업 추진의 활성화, 환류 및 개선 노력 -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이행 노력 등 * 평가 방법 - 9등급의 정성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				

<b>지 표 명</b>	<b>산업정책 개발 및 적용실적</b>				
<b>대 분 류</b>	경영성과		<b>중 분 류</b>	(재)시흥산업진흥원	
<b>가 중 치</b>	10점	<b>지표성격</b>	혼합	<b>평가방법</b>	목표부여/ 단계별평가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당해 기관에서 연구한 정책과제 및 현안과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되거나 유관기관에 전파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한다.				
<b>측정산식</b>	① 정책반영 실적 (35%) ② 연구확산 실적 (35%) ③ 정책연구 결과 활용 노력 및 적정성 (30%)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정책반영 실적 산정 시 '정책연구 과제수'는 최근 3년간 수행한 정책개발 과제 건수를 의미함. - '정책연구 과제'는 기본연구과제, 정책 및 현안과제, 수탁용역과제를 포함하며, '정책연구 과제수'는 정책연구 과제 건수를 의미함. - 수탁과제는 수탁과제가 완료된 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수탁과제만 산정함. ○ '정책반영 건수'는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결과가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된 건수를 의미함. ※ 1개의 정책연구과제에서 3개의 정책이 반영된 경우 3건으로 산정함. ○ 연구확산 실적 산정 시 '정책연구 과제수'는 당해연도 수행한 정책개발 과제 건수를 의미함. - '정책연구 과제'는 기본연구과제, 정책 및 현안과제를 포함하며, '정책연구 과제수'는 정책연구 과제 건수를 의미함. ○ '연구확산 건수'란 당해연도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당해 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수를 의미함.				
<b>세 부 평가방법</b>	※ ①번 정량지표 측정산식 $\text{평점} = \text{목표달성도} \times 100\text{점}$ $\text{목표달성도 평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times 100\text{점}$ * 최고목표 : 기준치 실적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실적 × 50% - 정책반영율 = (정책반영 건수 / 정책연구 과제수) × 100				

**세 부  
평가방법**

※ 연구확산 실적 세부 평가내용

\* 평가 내용 : 정책연구 과제수 대비 연구확산 건수의 비율

\* 평가 방법

연구확산율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가중치	1.0	0.9	0.8	0.7	0.6

※ 정책연구 결과 활용 노력 및 적정성 세부 평가내용

- 사업의 추진 및 내용의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노력
- 사업 추진의 활성화, 환류 및 개선 노력
-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이행 노력 등

\* 평가 방법

- 9등급의 정성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

<b>지 표 명</b>	<b>소공인지원센터 장비이용 실적</b>				
<b>대 분 류</b>	경영성과		<b>중 분 류</b>	(재)시흥산업진흥원	
<b>가 중 치</b>	5점	<b>지표성격</b>	혼합	<b>평가방법</b>	목표부여/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당해 기관이 소공인지원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소공인들의 이용실적을 평가한다.				
<b>측정산식</b>	① 장비이용 기업체 수 (30%) ② 장비가동 시간 (40%) ③ 장비이용도 제고를 위한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30%)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장비이용 기업체 수'은 당해 기관의 장비를 이용한 관내소재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한다(이용대금 납부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기준). ○ '장비가동시간'은 당해 기관이 보유중에 있는 장비의 운영시간을 말하며, 당해 기관에서 기업에 장비이용요금 부과시 견적서에 요금산출기준으로 기재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b>세 부 평가방법</b>	※ ①~②번 정량지표 측정산식 $\text{평점} = \text{목표달성도} \times 100\text{점}$ $\text{목표달성도 평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times 100\text{점}$ * 최고목표 : 기준치 실적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실적 × 50%  ※ 장비이용도 제고를 위한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세부 평가내용 - 사업의 추진 및 내용의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노력 - 사업 추진의 활성화, 환류 및 개선 노력 -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이행 노력 등 * 평가 방법 - 9등급의 정성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				

<b>지 표 명</b>	<b>B2B 시스템 운영성과</b>				
<b>대 분 류</b>	경영성과		<b>중 분 류</b>	(재)시흥산업진흥원	
<b>가 중 치</b>	5점	<b>지표성격</b>	혼합	<b>평가방법</b>	목표부여/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당해 기관에서 운영중에 있는 B2B시스템의 실적을 평가한다.				
<b>측정산식</b>	① 시스템 방문 건수 (35%) ② 시스템 참여기업 만족도 (35%) ③ B2B활성화 노력 및 적정성 (30%)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시스템 방문 건수'는 당해 기관에서 운영중인 B2B사이트 방문자 수를 말한다. ○ '참여기업 만족도'는 B2B사이트 방문자 및 등록기업의 만족도를 말한다. ○ '노력 및 적정성'은 B2B사이트 등록 업체수 및 홍보실적 등을 말한다.				
<b>세 부 평가방법</b>	※ ①~②번 정량지표 측정산식 $\text{평점} = \text{목표달성도} \times 100\text{점}$ $\text{목표달성도 평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times 100\text{점}$ * 최고목표 : 기준치 실적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실적 × 50%  ※ B2B활성화 노력 및 적정성 세부 평가내용 - 사업의 추진 및 내용의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노력 - 사업 추진의 활성화, 환류 및 개선 노력 -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이행 노력 등 * 평가 방법 - 9등급의 정성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				

#### 4.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부문 평가지표

##### 1) 개별 사업부문 평가지표체계

구분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고유 사업 평가 지표	IV. 경영성과 (65점)	기관 고유사업 (혼합 / 50)	· 도시재생대학 운영	13	혼합
			· 도시재생 기획사업 발굴	13	혼합
			· 주민 컨설팅·상담	10	혼합
			· 도시재생 주민지원 사업 추진	7	혼합
			· 교육프로그램 운영	7	혼합
고유사업지표 개별 소계				50점	

## 2) 개별 사업부문 평가지표 지표정의서

### (1) 고유사업 평가지표 (개별 배점: 50점)

지 표 명	도시재생대학 운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가 중 치	13점	지표성격	혼합	평가방법	목표부여/ 단계별평가 절대평가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이 주민이 공감하고 실행 가능한 도시재생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① 도시재생대학 교육운영 시간 (25%) ② 교육 수료 인원수 (25%) ③ 교육참여자 만족도 (20%) ④ 도시재생대학 운영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3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도시재생대학 운영 시간’은 당해 기관에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 완료한 교육 운영 시간을 의미함. ○ ‘교육인원 수’는 당해 기관에서 개설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수료한 연인원을 의미함. * 수료인원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에 한함. ○ ‘교육만족도’는 교육 참여 대상자가 구조화된 설문에 응하여 평가한 교육 만족도의 평균값을 의미함.				
세 부 평가방법	※ ①~②번 정량지표 측정산식 평점 = 목표달성도 x 100점 $\text{목표달성도 평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times 100\text{점}$ * 최고목표 : 기준치 실적 x 110% 최저목표 : 기준치 실적 x 50%				

**세 부  
평가방법**

- ※ 교육참여자 만족도 세부 평가내용
- \* 평가 내용 : 단계별 평가(교육만족도)
- \* 평가 방법

교육만족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가중치	1.0	0.8	0.6	0.4	0

- ※ 도시재생대학 운영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세부 평가내용
  - 사업의 추진 및 내용의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노력
  - 사업 추진의 활성화, 환류 및 개선 노력
  -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이행 노력 등
- \* 평가 방법
  - 9등급의 정성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



<b>지 표 명</b>	<b>도시재생 기획사업 발굴</b>				
<b>대 분 류</b>	경영성과		<b>중 분 류</b>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b>가 중 치</b>	13점	<b>지표성격</b>	혼합	<b>평가방법</b>	목표부여/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당해 기관이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촉진과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신규 사업 콘텐츠 및 기획사업을 발굴한 실적을 평가한다.				
<b>측정산식</b>	① 도시재생 사업지원 콘텐츠 발굴 건수 (25%) ②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건수 (25%) ③ 도시재생 기반구축 건수 (20%) ④ 도시재생 기획사업 발굴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30%)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도시재생 사업지원 콘텐츠 발굴 건수’는 도시재생사업지원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건수를 의미함. ○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건수’는 당해 기관이 국·도비 공모 사업의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대응을 지원한 사업의 건수를 의미함. ○ ‘도시재생 기반구축 건수’는 도시재생 필요지역 검토 및 우선 추진사업 파악 등을 위해 구축된 지역자원 및 관련 데이터 분석 건수를 의미함. * 분석 건수는 내부 결과 보고 건수로 평가				
<b>세 부 평가방법</b>	※ ①~③번 정량지표 측정산식 평점 = 목표달성도 x 100점 $\text{목표달성도 평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times 100\text{점}$ * 최고목표 : 기준치 실적 x 110% 최저목표 : 기준치 실적 x 50%  ※ 도시재생 기획사업 발굴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세부 평가내용 - 사업의 추진 및 내용의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노력 - 사업 추진의 활성화, 환류 및 개선 노력 -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이행 노력 등 * 평가 방법 - 9등급의 정성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				

<b>지 표 명</b>	<b>주민 컨설팅·상담</b>				
<b>대 분 류</b>	경영성과		<b>중 분 류</b>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b>가 중 치</b>	10점	<b>지표성격</b>	혼합	<b>평가방법</b>	목표부여/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당해 기관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유관단체, 지역주민 등 해당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및 컨설팅 실적을 평가한다.				
<b>측정산식</b>	① 컨설팅 횟수 (35%) ② 주민(단체) 상담 건수 (35%) ③ 주민 컨설팅·상담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30%)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컨설팅 건수’는 당해 기관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재생 분야의 컨설팅 건수를 의미함. ○ ‘상담’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상담(대면, 전화, 방문, 이메일 등 포함) 형식으로 제공한 실적을 의미함.				
<b>세 부 평가방법</b>	※ ①~②번 정량지표 측정산식 $\text{평점} = \text{목표달성도} \times 100\text{점}$ $\text{목표달성도 평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times 100\text{점}$ * 최고목표 : 기준치 실적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실적 × 50%  ※ 주민 컨설팅·상담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세부 평가내용 - 사업의 추진 및 내용의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노력 - 사업 추진의 활성화, 환류 및 개선 노력 -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이행 노력 등 * 평가 방법 - 9등급의 정성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				

<b>지 표 명</b>	<b>도시재생 주민지원 사업 추진</b>				
<b>대 분 류</b>	경영성과		<b>중 분 류</b>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b>가 중 치</b>	7점	<b>지표성격</b>	혼합	<b>평가방법</b>	목표부여/ 절대평가
<b>지표정의</b>	○ 당해 기관이 실시한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 특화사업, 맞춤형정비사업, 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주민지원 사업의 실적을 평가한다.				
<b>측정산식</b>	① 도시재생 주민지원 사업 추진 건수 (40%) ② 집행 실적 (30%) ③ 도시재생 주민지원 사업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30%)				
<b>평가내용 조작적 정의</b>	○ ‘도시재생 주민지원사업 추진 건수’는 당해 기관이 직접 수행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원도심 도시재생 특화사업 및 기타 도시재생 주민 지원 사업의 추진 건수를 의미함. ○ ‘집행 실적’은 예산금액 대비 집행금액의 비율로 산출하며, ‘집행금액’은 관련 도시재생 사업 운영에 사용된 총 금액을 의미하고, ‘예산금액’은 해당 사업 예산의 총금액을 의미함.				
<b>세 부 평가방법</b>	※ ①~②번 정량지표 측정산식 $\text{평점} = \text{목표달성도} \times 100\text{점}$ $\text{목표달성도 평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times 100\text{점}$ * 최고목표 : 기준치 실적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실적 × 50%  ※ 도시재생 주민지원 사업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세부 평가내용 - 사업의 추진 및 내용의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노력 - 사업 추진의 활성화, 환류 및 개선 노력 -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이행 노력 등 * 평가 방법 - 9등급의 정성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				

지 표 명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혼합	평가방법	목표부여/ 절대평가												
지표정의	○ 당해 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좌, 워크숍, 포럼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주민, 유관 기관 직원, 활동가 참여 실적 등을 측정하여 도시재생 참여자의 인식 개선과 역량강화 기여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① 프로그램 운영 시간 (25%) ② 참여 인원수 (25%) ③ 참여자 만족도 (20%) ④ 프로그램 운영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3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당해 기관에서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 완료한 운영 시간을 의미함. ○ '참여 인원 수'는 당해 기관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참여한 연인원을 의미함. * 참여인원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에 한함. ○ '참여자 만족도'는 참여 대상자가 구조화된 설문에 응하여 평가한 프로그램 만족도의 평균값을 의미함.																
세 부 평가방법	<p>※ ①~②번 정량지표 측정산식  평점 = 목표달성도 x 100점  <math display="block">\text{목표달성도 평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times 100\text{점}</math> * 최고목표 : 기준치 실적 x 110%  최저목표 : 기준치 실적 x 50%</p> <p>※ 참여자 만족도 세부 평가내용  * 평가 내용 : 단계별 평가(만족도)  * 평가 방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만족도</td> <td>90%이상</td> <td>80%이상</td> <td>70%이상</td> <td>60%이상</td> <td>60%미만</td> </tr> <tr> <td>가중치</td> <td>1.0</td> <td>0.8</td> <td>0.6</td> <td>0.4</td> <td>0</td> </tr> </table> <p>※ 프로그램 운영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세부 평가내용  - 사업의 추진 및 내용의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노력  - 사업 추진의 활성화, 환류 및 개선 노력  -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이행 노력 등  * 평가 방법  - 9등급의 정성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p>					만족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가중치	1.0	0.8	0.6	0.4	0
만족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가중치	1.0	0.8	0.6	0.4	0												

<p style="text-align: center;"><b>세 부 평가방법</b></p>	<p>※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동의 노력 및 적정성 세부 평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추진 및 내용의 적정성</li> <li>-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노력</li> <li>- 사업 추진의 활성화, 환류 및 개선 노력</li> <li>-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이행 노력 등</li> </ul> <p>*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등급의 정성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li> </ul>
--	--

## 5. 시흥매화산단개발(주) 경영평가 평가모델

### 1) 출자기관 평가지표체계

구분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출자 기관 평가 지표	경영성과 (100점)	기관 고유사업 (혼합 / 100)	· 보상업무 사업	20.0	혼합
			· 인허가 업무 사업	15.0	혼합
			· 공사관리 사업	35.0	혼합
			· 분양업무 사업	25.0	혼합
			· 공급처리시설 사업	5.0	혼합
고유사업지표 개별 소계				100점	

## 2) 출자기관 평가지표 지표정의서

### (1) 고유사업 평가지표 (개별 배점: 100점)

평가 지표	1. 보상업무 사업 (20점)																				
지표 정의	○ 산업단지, 준용도로의 편입 국·공유지에 대해 유·무상귀속 협의 및 매화1 체육공원 사유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세부 평가 내용	①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연간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 ② 사업집행의 적절성 -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변화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③ 사업의 비계량적 성과의 적정성 - 계획 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10점																			
	[ 정량지표 ] ① 국공유지 협의 달성도 - 산업단지, 준용도로의 국·공유지 협의 달성도 - 실적 : 실제 총 협의면적 ÷ 연초 계획한 협의 면적 -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방식 (목표 100%) - 평가산식: 당해연도 실적 ÷ 당해연도 목표 × 100%	5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총 면적(㎡)</th> <th>2018년 까지 협의(㎡)</th> <th>2019년 목표(㎡)</th> <th>목표</th> </tr> </thead> <tbody> <tr> <td>산업단지</td> <td>40,253</td> <td>13,439</td> <td>26,814</td> <td>100%</td> </tr> <tr> <td>준용도로</td> <td>34,168</td> <td>226</td> <td>33,942</td> <td>100%</td> </tr> <tr> <td>계</td> <td>74,421</td> <td>13,665</td> <td>60,756</td> <td>100%</td> </tr> </tbody> </table> <p>※ 무상귀속 포함(추후 변경 가능)</p>	구 분	총 면적(㎡)	2018년 까지 협의(㎡)	2019년 목표(㎡)	목표	산업단지	40,253	13,439	26,814	100%	준용도로	34,168	226	33,942	100%	계	74,421	13,665	60,756	100%
구 분	총 면적(㎡)	2018년 까지 협의(㎡)	2019년 목표(㎡)	목표																	
산업단지	40,253	13,439	26,814	100%																	
준용도로	34,168	226	33,942	100%																	
계	74,421	13,665	60,756	100%																	
	② 훼손지1(매화1 체육공원) 보상 달성도 - 훼손지1 보상 달성도 - 실적 : 실제 총 보상면적 ÷ 연초 계획한 보상 면적 -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방식 (목표 100%) - 평가산식: 당해연도 실적 ÷ 당해연도 목표 × 100%	2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총 면적(㎡)</th> <th>2018년 까지 협의(㎡)</th> <th>2019년 목표(㎡)</th> <th>목표</th> </tr> </thead> <tbody> <tr> <td>훼손지1</td> <td>19,084</td> <td>8,000</td> <td>11,084</td> <td>100%</td> </tr> </tbody> </table>	구 분	총 면적(㎡)	2018년 까지 협의(㎡)	2019년 목표(㎡)	목표	훼손지1	19,084	8,000	11,084	100%										
구 분	총 면적(㎡)	2018년 까지 협의(㎡)	2019년 목표(㎡)	목표																	
훼손지1	19,084	8,000	11,084	100%																	

	③ 훼손지2(매화2 체육공원) 사유지 보상 달성도 - 훼손지2 사유지 보상 달성도 - 실적 : 실제 총 보상면적 ÷ 연초 계획한 보상 면적 -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방식 (목표 100%) - 평가산식: 당해연도 실적 ÷ 당해연도 목표 × 100%			3점
	구분	총 면적(m <sup>2</sup> )	2019년 목표(m <sup>2</sup> )	
	훼손지2	28,034	2,800	
			목표	100%



평가 지표	2. 인허가 업무 사업 (15점)	
지표 정의	○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준용도로의 공사준공을 위해 행정상 필요한 준공인허가 절차 이행 및 그린벨트 훼손지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세부 평가 내용	①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연간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 ② 사업집행의 적절성 -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변화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③ 사업의 비계량적 성과의 적정성 - 계획 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5점
	[ 정량지표 ] ① 이주자택지 준공인가 - 이주자택지 준공위한 행정절차 이행 - 실적: 총 행정절차 이행완료(이주자택지 준공인가) - 목표: 100% - 평가방법: 행정절차 이행완료 시 - 평가산식: 실적 이행완료 × 100%	5점
	② 산업단지 준공인허가 서류 작성 및 제출 - 산업단지 준공위한 행정절차 준비 - 실적: 준공인허가 서류 작성 및 제출 - 목표: 100% - 평가방법: 준공인허가 이행위한 관련서류 시 제출시 - 평가산식: 실적 이행완료 × 100%	2점
	③ 훼손지2 복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훼손지2 복구사업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 실적: 총 행정절차 이행완료(실시계획인가 고시) - 평가방법: 행정절차 이행완료 시 - 평가산식: 실적 이행완료 × 100%	2점
	④ 훼손지2 지구외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 훼손지2 복구사업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 실적: 총 행정절차 이행완료(실시계획인가 고시) - 평가방법: 행정절차 이행완료 시 - 평가산식: 실적 이행완료 × 100%	1점

평가 지표	3. 공사관리 사업 (35점)	
지표 정의	○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준용도로, 지구외관로 공사준공 및 훼손지1,2 및 진입도로 공사착공을 위해 2019년 시공 공정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업무 시행	
세부 평가 내용	①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연간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 ② 사업집행의 적절성 -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변화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③ 사업의 비계량적 성과의 적정성 - 계획 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 공사 품질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10점
	[ 정량지표 ] ① 산업단지 공정계획 관리 달성도 -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공정계획 달성 - 실적: 산업단지 목표공정률 ÷ 연내 추진한 공정률 - 목표 공정률: 100% (2018년 공정률 73.78%) -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방식 (목표 100%) - 평가산식: 당해연도 실적 ÷ 당해연도 목표 × 100%	8점
	② 이주자택지 공정계획 관리 달성도 -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공정계획 달성 - 실적: 이주자택지 목표공정률 ÷ 연내 추진한 공정률 - 목표 공정률: 100% (2018년 공정률 95.12%) -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방식 (목표 100%) - 평가산식: 당해연도 실적 ÷ 당해연도 목표 × 100%	7점
	③ 준용도로 공정계획 관리 달성도 -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공정계획 달성 - 실적: 준용도로 목표공정률 ÷ 연내 추진한 공정률 - 목표 공정률: 90% (2018년 공정률 82.09%) -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방식 (목표 100%) - 평가산식: 당해연도 실적 ÷ 당해연도 목표 × 100%	5점

	<p>④ 지구외관로 공정계획 관리 달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공정계획 달성</li> <li>- 실적: 지구외관로(A, B구간) 목표공정률 ÷ 연내 추진한 공정률</li> <li>- 목표 공정률: 100%</li> <li>-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방식 (목표 100%)</li> <li>- 평가산식: 당해연도 실적 ÷ 당해연도 목표 × 100%</li> </ul>	3점
	<p>⑤ 훼손지 공정계획 관리 달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공정계획 달성</li> <li>- 실적: 훼손지1,2, 준용도로 목표공정률 ÷ 연내 추진한 공정률</li> <li>- 목표 공정률: 20%</li> <li>-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방식 (목표 100%)</li> <li>- 평가산식: 당해연도 실적 ÷ 당해연도 목표 × 100%</li> </ul>	2점

<b>평가 지표</b>	<b>4. 분양업무 사업 (25점)</b>				
<b>지표 정의</b>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분양 계약 체결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b>세부 평가 내용</b>	①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연간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 ② 사업집행의 적절성 -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변화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③ 사업의 비계량적 성과의 적정성 - 계획 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10점	
	[ 정량지표 ] ①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 달성도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 체결 - 실적: 실제 분양계약 면적 ÷ 연초 계획한 분양 면적 -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방식 (목표 100%) - 평가산식: 당해연도 실적 ÷ 당해연도 목표 × 100%			5점	
	구 분	총 분양면적(㎡)	2018년 까지 분양(㎡)	2019년 목표(㎡)	목표
	산업시설용지	199,188	179,263	19,925	100%
② 지원시설용지 분양계약 달성도 -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 계약 체결 - 실적: 실제 분양계약 면적 ÷ 연초 계획한 분양 면적 -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방식 (목표 100%) - 평가산식: 당해연도 실적 ÷ 당해연도 목표 × 100%			5점		
구 분	총 분양면적(㎡)	2018년 까지 분양(㎡)	2019년 목표(㎡)	목표	
지원시설용지	17,264	6,734	8,424	100%	
③ 이주주택지 분양계약 달성도 - 산업단지 이주주택지 분양 계약 체결 - 실적: 실제 분양계약 면적 ÷ 연초 계획한 분양 면적 -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방식 (목표 100%) - 평가산식: 당해연도 실적 ÷ 당해연도 목표 × 100%			5점		
구 분	총 분양면적(㎡)	2018년 까지 분양(㎡)	2019년 목표(㎡)	목표	
이주주택지	8,041	7,141	900	100%	

<b>평가 지표</b>	<b>5. 공급처리시설 사업 (5점)</b>	
<b>지표 정의</b>	○ 산단 및 준용도로 내 준공위한 지구외관로(우오수 A, B라인), 전기, 통신 등 공급관로 등에 대한 수행	
<b>세부 평가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li> <li>-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연간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li> </ul> </li> <li>② 사업집행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li> <li>-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li> <li>-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변화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li> </ul> </li> <li>③ 사업의 비계량적 성과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li> <li>-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li> </ul> </li> </ul>	2점
	<p>[ 정량지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구외관로(A,B라인) 설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외관로 우·오수 A,B 라인 설치</li> <li>- 실적: 지구외관로 우·오수 A,B 라인 설치완료</li> <li>- 평가방법: 이행완료 시 (목표 100%)</li> <li>- 평가산식: 실적 이행완료 × 100%</li> </ul> </li> </ul>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산단 및 준용도로 구간 전기 및 통신, 가스관 추가이설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단 및 준용도로 구간 전기 및 통신, 가스관 추가이설</li> <li>- 실적: 전기 및 통신, 가스관 추가이설 완료</li> <li>- 평가방법: 이행완료 시 (목표 100%)</li> <li>- 평가산식: 실적 이행완료 × 100%</li> </ul> </li> </ul>	1점

### **Ⅲ. 기관장 평가지표 체계 및 지표정의서**

---

#### **1. 기관장 이행성과계약 평가모델**



# 1. 기관장 이행성과계약 평가모델

## 1) 기관장 평가지표체계

평가범주	평가지표	배점
리더십 및 책임경영	리더십	15.0
	책임경영	15.0
	소계	30.0
성과과제	중장기 전략과제 및 혁신과제	20.0
	경영시스템*	10.0
	경영성과*	30.0
	사회적가치*	6.0
	정책준수*	4.0
	소계	70.0
총 계		100.0

\*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준수 지표는 기관평가결과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



## 2) 평가지표별 지표정의서

### I 리더십 및 책임경영

#### - 리더십 (15점)

평가 지표	리더십	
지표 정의	▷ 기관의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 주요 현안과제 해결 및 미래과제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세부 평가 내용	①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② 기관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은 적절한가 ?	15점

#### - 책임경영 (15점)

평가 지표	책임경영	
지표 정의	▷ 효율적인 이사회 등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자체의 우수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세부 평가 내용	①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이사회 활성화 및 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② 비상임이사 등의 전문성을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전략적 경영자문 및 지원역할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15점

<b>II</b>	<b>성과과제</b>
-----------	-------------

- 중장기 전략과제 및 혁신과제 (20점)

평가 지표	중장기 전략과제 및 혁신과제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임기 중 해결해야 할 기관의 중장기 전략 과제에 대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li> <li>▷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 혁신 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li> </ul>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장기 전략과제의 추진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었으며 이의 집행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li> <li>② 중장기 전략과제별 추진실적과 계량 및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li> <li>③ 중장기 전략과제별 환류활동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li> <li>④ 외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비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li> <li>⑤ 제도개선, 새로운 아이디어 접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한 혁신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li> </ul>	20점

- 경영시스템 (10점)  
: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해당 지표 평가결과를 준용하여, 10점 만점으로 환산
  
- 경영성과 (30점)  
: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해당 지표 평가결과를 준용하여, 30점 만점으로 환산
  
- 사회적가치 (6점)  
: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해당 지표 평가결과를 준용하여, 6점 만점으로 환산
  
- 정책준수 (4점)  
: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해당 지표 평가결과를 준용하여, 4점 만점으로 환산

**End of Document**

---

**2020년도(19년실적)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

- 평가대상연도 : 2020년도(19년실적)
- 발 행 인 : 시흥시
- ▷ 홈페이지 : <http://www.siheung.go.k>

---

**【 비 매 품 】**